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양은숙 의원, 이연숙 의원

## 1. 제안이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나.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다.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범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관리인력 지원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생활체육진흥법(법률)」(2023.8.8. 일부개정, 2024.2.9. 시행)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4.10.18. 일부개정·시행)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별 시설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라켓볼장 7. 럭비풋볼장 8. 롤러스케이트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썰매장</li> <li>19. 씨름장</li> <li>20. 아이스하키장</li> <li>21. 야구장</li> <li>22. 양궁장</li> <li>23. 역도장</li> <li>24. 에어로빅장</li> <li>25. 요트장</li> <li>26. 육상장</li> <li>27. 조정장</li> <li>28. 체력단련장</li> <li>29. 체육도장</li> <li>30. 체조장</li> <li>31. 축구장</li> <li>32. 카누장</li> <li>33. 탁구장</li> <li>34. 테니스장</li> <li>35. 펜싱장</li> <li>36. 하키장</li> <li>37. 핸드볼장</li> <li>38. 인공암벽등반장</li> <li>39.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li> </ol>
그 밖의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동장</li> <li>2. 체육관</li> <li>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li> </ol>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안 제5조)에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의 장과 협약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학교의 수, 지원 범위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업 추진 시 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김 보 경 (☎ 2052)